

2025 글로벌대학 지정계획

2025. 4.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

목 차

I. 추진 개요	1
II. 2024년 주요 추진 성과	2
III. 2025년 추진 방향	4
IV. 2025년 글로벌대학 지정 계획	6
1. 개요	6
2.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지정 절차	8
3. 예비지정 계획	9
4. 본지정 계획	11
V. 추진체계 및 기타 사항	14
VI. 성과관리	15
VII. 향후 추진 일정	16

[붙임1] 2025년 글로벌대학 지정계획 주요 변경 사항

[붙임2] 글로벌대학30 프로젝트의 비전·목표 및 추진전략

[붙임3] 글로벌대학30 프로젝트 성과관리계획 주요내용

I. 추진 개요

1 추진 배경

- 인구·산업구조 급변 등으로 위기에 처한 대학이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과감한 대전환을 할 수 있도록 대학 지원 전략 전면 혁신
 - ※ IMD 대학경쟁력 ('21) 47위 → ('22) 46위 → ('23) 49위 → ('24) 46/67개국
- 지역 우수 인재들이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경쟁력 있는 지역 대학을 육성하여 지역을 발전시키는 혁신생태계의 허브 구축
 - ※ 스웨덴 말뫼시는 말뫼대의 혁신적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지원으로 유럽 최고의 스타트업 도시로 도약
 - ※ 글로벌대학30 프로젝트의 비전·목표 및 추진 전략[붙임2]

2 추진 경과

- 「글로벌대학30 추진방안」 발표('23.4.) 및 신청 접수('23.5.)
 - ※ 총 108개교, 94건 혁신기획서 제출(통합 추진 27교, 단독 81교)
- 2023년 글로벌 예비지정 대학 15개 발표('23.6.)
- 2023년 글로벌 본지정 대학 10개 지정('23.11.)

① 강원대·강릉원주대, ② 경상국립대, ③ 부산대·부산교대, ④ 순천대, ⑤ 안동대·경북도립대, ⑥ 울산대, ⑦ 전북대, ⑧ 충북대·한국교통대, ⑨ 포항공대, ⑩ 한림대
- 「2024년 글로벌대학 지정계획」 발표('24.2.) 및 신청 접수('24.3.)
 - ※ 총 109개교, 65건 혁신기획서 제출(통합 추진 14교, 연합 추진 56교, 단독 39교)
- 2024년 글로벌 예비지정 대학 20개 발표('24.4.)
- 2024년 글로벌 본지정 대학 10개 지정('24.8.)

① 건양대, ② 경북대, ③ 국립목포대, ④ 국립창원대·경남도립거창대·경남도립남해대·한국승강기대, ⑤ 동아대·동서대, ⑥ 대구보건대·광주보건대·대전보건대, ⑦ 대구한의대, ⑧ 원광대·원광보건대, ⑨ 인제대, ⑩ 한동대
- 2025년 글로벌대학 지정계획(시안) 공청회 등 의견수렴('25.1.)

II. 2024년 주요 추진 성과

□ 대학 사회 전반의 혁신 동력 강화

- '24년 신청 가능 대학(151교) 중 약 72%(109교)가 혁신기획서를 제출, 대학 내·외부의 벽을 허무는 과감한 혁신 모멘텀 제공
- 예비지정 대학을 포함한 총 45개의 혁신기획서*와 본지정 대학의 실행계획서를 대국민 공개하여 혁신전략 공유 및 질적 제고 유도
 - * 혁신기획서 제공에 동의한 모든 대학의 혁신기획서를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
- 연합 신청유형을 신규 도입하여 높은 수준의 대학 간 연계·협력* 및 시너지 창출을 통한 공동의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 * 대학 간 통합 산학협력단 운영, 보건의료 전문인력 표준 교육모델 공동개발 및 해외진출 등

□ 혁신 파트너로서 '자율 혁신 지원' 중심으로 교육부 역할 전면 전환

- 신규 지정과정에서 예비지정 대학 대상 워크숍,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혁신 모델의 고도화 및 실행계획 실행력 제고를 뒷받침
- 글로벌대학 혁신 지원 토론회*, 글로벌대학 콜로키움** 등 대학의 혁신 난점 돌파 및 성과 창출을 위한 다층적 지원구조 운영
 - * 글로벌대학의 혁신 난점 해결을 위해 교육부 소관부서,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원스톱 논의
 - ** 글로벌대학위원회 주관, 글로벌대학별 핵심 혁신과제 성과 창출을 위한 전문가 자문
- 혁신 선도 Test-bed로서 글로벌대학이 제시한 규제혁신 사항을 우선 검토·적용하고 전체 대학으로 성과 확산 추진

< 글로벌대학 패키지 규제개혁 ('24)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총 11건, '24.2.)	▲학과·학부 조직원칙 및 교원 교수시간 원칙 폐지 ▲학교 밖 협동수업 신설 ▲학생전과 확대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졸업학점 제한 폐지 등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방안(총 12건, '24.9.)	▲주요 보직에 외부 인사 임명 허용 ▲비전임교원 정년기준(65세) 예외 ▲공개채용 절차 예외 적용 ▲국립대학 교직원 인센티브 허용 등
* '25.3월 특례 적용 예정	

□ 대학 내외의 벽을 허무는 혁신모델 확산

- 지역 산업과 연계한 학사구조 개편, 전공자유선택제·JA교원 등 학내외 벽을 허무는 체질 개선 전략이 대학사회 전반에 확산
 - 대학 간 통합·연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 연구기관·산업체 클러스터링, 특성화 기반 글로벌 진출 등 선도적인 특화모델 추진 중
- ※ '23년 지정대학의 혁신모델을 자체 혁신계획과 접목하여 독자적 추진모델로 고도화
(예시) ▲국공립대 최초 통합 승인('24.6월) → 일반대-전문대 통합 기반 특성화 체질개선, ▲대학-산업체-병원 공동 지역산업육성기금 조성 → 시민펀드(교육·문화 등 바우처 제공)

< 글로벌대학의 특화모델 (예시) >

영역	주요 혁신방향
교육혁신	AI 교육혁신 (교육 전 단계에 적용할 AI 교육 솔루션 개발 등 AI 기반 고등교육 혁신모델 구축) 해외대학 공동모델 (해외 유수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하고 시범 교육모델 확립)
연구혁신	거점대학 연구중심 전환 (학부정원 감축으로 대학원 정원 확대하고 해외 연구 교류 확대) 정부출연연 융합 (대학과 정부출연연 간 융합으로 특성화대학원 설립 및 연구역량 강화)
자산학 협력	강소기업 육성 (대학이 협력·지원 대상을 강소지역기업으로 지정하여 집중 지원) 도시재생 (폐교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부지 매입 및 유학생창업 캠퍼스 조성 등 공동투자) 도시 캠퍼스화 (도시 전체를 교육·산업·지역혁신의 공간으로 조성하여 학생·시민에 서비스 제공) 클러스터링 (대학·병원·입주기업 및 연구소 연계로 제품 검증·연구·사업화 등 전주기 지원)
글로벌 협력	교육모델 수출 (대학 간 강점을 집약하여 교육과정 표준 개발 및 공동 해외 진출) 특성화분야 사업화 (해외 수요를 토대로 협업대학을 확보하여 현지 공동 사업 추진)
대학 통합 (체제개편)	1도1국립대학 (강력한 혁신과 캠퍼스 간 균형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도입) 종합교원양성체계 (종합대·교육대 간 통합으로 교육특화캠퍼스 조성 및 초중등 교원양성체계 완성) 국·공립대 통합 (국립대·공립대 간 통합 및 '공공형 대학'으로 공립대학 기능 전환) 사립대 통합 (동일 학교법인 내 사립대 간 통합 및 강점분야 특성화)
재정혁신 (지속가능성)	법인투자자유치 (글로벌지원금을 마중물로 학교법인의 대규모 교육투자 확보) 지역산업육성기금 (학교법인, 지자체, 대학, 병원, 지역기업이 자산학협력을 위한 자유키금 조성) 특화산업 수출수익 (대학 역량-지역산업 연계로 특화산업 활성화 및 해외 수출 수익확보) 시민펀드 (지역사회 모금으로 펀드를 조성하고 대학이 교육·문화·건강·산업 등의 바우처 제공) 수익형 통합산단 (대학 간 통합 산학협력단에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고 수익 창출 극대화)

Ⅲ. 2025년 추진 방향

① '25년에 글로벌대학 지정 최종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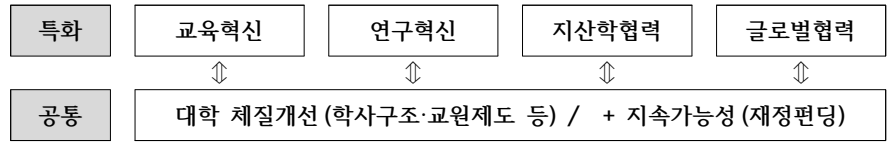
- (취지) 다년간의 지정 준비로 누적된 대학의 피로도와 혁신동력의 지속성을 감안하여 선정과정 단축이 필요하다는 현장 요청 반영
- ※ 혁신동력 유지 및 다년간에 걸친 지정 준비 피로도 등을 감안하여 당초 '25년 5개, '26년 5개 지정에서 '25년 10개 이내 지정 완료 검토(글로벌대학위원회)
- (방향) 선정과정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25년에 글로벌대학 지정 최종 완료 ('25년 5개 내외 '26년 5개 내외 → '25년 10개 이내)

② 혁신성과 실행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글로벌대학 지정

- (취지) 타 대학이 벤치마킹할 선도모델을 다채롭게 제시토록 既지정 글로벌대학의 혁신모델과 차별화된 모델을 전략적으로 육성
 - (방향) ①글로벌역량 강화 ②대학 전반의 혁신 도모
- ① 글로벌역량 : 교육·연구·지산학협력 등 대학의 특화 방향과 연계
- 지역대학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글로벌역량 분야에서 혁신 비전과 액션플랜을 제시할 수 있는 모델 발굴 필요
 - ※ 지역(Local)을 넘어 세계(Global)로 나아가는 혁신전략 강화 필요(글로벌대학위원회)
- ② 전면적 혁신 : 대학 전반의 체질개선과 지속가능성 확보
- 혁신모델은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학사구조·교육과정·교원제도 등 대학의 비전 실현과 이를 위한 근간 요소 혁신과 밀접히 연결
 - ※ 단편적이고 분절적인 예산 과업이 아닌 대학 전반 혁신 필요(글로벌대학 콜로키움)
 - 정부의 행·재정 지원은 혁신 모멘텀(마중물)이며,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체 재정 확보-재투자 등 선순환 기반 마련 필요
 - ※ 정부 지원 종료 후에도 성과를 지속·발전시킬 전략 제시 필요(글로벌대학위원회)

< 참고 : 글로벌대학 콜로키움* 전문가 주요 의견 >

- (혁신관점) 학생이 선택하고, 산업체가 협력을 희망하는 대학이 될 수 있어야 함
- (체질개선) 특화 방향과 연계하여 대학 근간인 학사구조+교육과정+교원제도 뒷받침 필요
- (지속가능성)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 없이도 과제를 지속 추진할 수 있어야 함



* 글로벌대학의 혁신 난점해소 및 성과창출을 위한 전문가-대학관계자 정례 협의('24.11월~)

3] 글로벌대학 프로젝트와 RISE와의 연계성 강화

- (취지) 글로벌대학은 RISE 생태계에서 혁신 선도 역할을 수행하므로, 미지정 지역과 타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국회 등 의견 반영
 - ※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선도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글로벌대학 프로젝트 취지를 감안하여 글로벌대학의 지역 편중 해소 필요성 강조(국회, 언론 등)
- (방향) 혁신성·실현가능성 기준의 평가 기초를 확고히 견지*하며, 본지정 평가 결과가 유사한 경우에 한하여 시도별 지정 현황 고려
 - * 권역별 구분 평가나 시도별 지정대학 수 사전 안배 등 없이 평가 주안점으로 평가 하며, 예비지정 평가 시에는 시도별 지정 현황을 고려하지 않음
 - ※ 혁신기획서 및 실행계획서는 RISE 계획과 유기적 연계 필요

< 시도별 글로벌대학 지정 현황 >

시도 (대학 수)	경북 (4)	경남 (3)	부산 (2)	전북 (2)	전남 (2)	강원 (2)	대구 (1)
대학	국립경국대 포항공대 대구한인대 한동대	경상국립대 인제대 창원가장남해 ·승강기대	부산부산교대 동아·동서대	전북대 원광원광교대	순천대 목포대	강원강릉원주대 한림대	경북대
시도 (대학 수)	충북 (1)	충남 (1)	울산 (1)	대전	세종	광주	제주
대학	충북한국교대	건양대	울산대	-	-	-	-

※ 초광역 대구보건대·광주보건대·대전보건대 1개 미포함(대구 1교, 광주 1교, 대전 1교)

⇒ 2025년 글로벌대학 지정계획에 주요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여 현장성 증진

IV. 2025년 글로벌대학 지정 계획

- 「글로벌대학30」 추진방안('23.4.)에서 제시한 문제의식과 비전 및 목표, 추진 전략, 성과관리 기본방향 유지
- 「2024 지정계획」('24.2.)에서 글로벌대학위원회, 국회, 대학 등이 권고 또는 제안한 사항을 적극 반영·보완하여 '25년 글로벌대학 지정 추진

1 개요

- (근거) 「고등교육법」 제7조 및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제17조
- (지정 규모) '25년 10개 이내
- (지원기간) 5년('25.~'29.)
- (지원) 교당 5년간 최대 1,000억원 지원, 대학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우선 추진, 지자체 및 범부처 지원 유도
 - 대학은 본지정 실행계획 수립 시 연차별 지원액 조정 신청 가능, 글로벌위는 대학 규모, 실행계획, 이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액 산정
 - ※ ① 통합 추진대학은 통합에 참여하는 대학 수, 학교별 역할, 학교 규모, 실행계획, 이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학별 연차별 지원액 조정(평균 지원액 약 1,500억원)
 - ② 연합 추진대학은 참여대학 수에 관계없이 단일 대학과 동일하게 예산 지원(연합 건당 최대 1,000억원)
 - ※ 「글로벌대학30」 지원은 총 3조원 범위 내 추진
 - 대학별 글로벌대학 지원금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시도별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지원
 - ※ 시도별 RISE예산 교부 시 글로벌대학 지원을 교부조건으로 부가
- (신청자격) '25년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고등교육법」 상 대학, 교육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특별법상 과학기술원, 사이버대, 각종대학은 제외)
 -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

- 기관평가인증* 결과 **조건부 인증 이상을 받은 대학**(국·공·사립 전체) 및 사립대학 재정진단 결과 **재정건전대학**

* 일반대·전문대 기관평가인증,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 글로컬대학 지원기간 중 기관평가인증 미인증 또는 경영위대학 지정 시 자격중단, 지원 중지 및 협약 해지(기 지원금 환수 여부 등은 글로컬대학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

- **분교**는 본교와 별도로 분교 소재지에 따라 **신청 가능**, 설립 인가를 받지 않은 **캠퍼스**는 본교와 **통합**하여 분교 소재지에 따라 **신청***

* 대학 전체 정원 중 수도권 소재 캠퍼스의 정원이 50% 초과일 경우 신청 불가

※ 본교 소재지는 예비지정 신청 시 대학알리미(academyinfo.go.kr) 정보 기준으로 판단

□ **(공동신청)** 신청자격을 갖춘 2개 이상 대학이 **공동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 **(통합)** 2개 이상 대학이 지원 기간 중 **통합을 전제로**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는 통합 추진대학의 경우,

- **협약체결 후 1년 이내**에 교육부로 공식적인 **통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 기간 내에 통합대학 출범 완료

※ 통합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글로컬대학위원회 심의에 따라 제출 기한 조정 가능

- **(연합)** 2개 이상의 대학이 지원 기간 중 **혁신적인 공동의 단일의사결정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대학 간 연합 형태**로 혁신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 **본지정 평가 시 대학 정관 등** 해당 사항을 반영한 공식 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 **종료 후에도** 계속 연합대학을 유지하거나 통합 필수

※ [표1] 대학 간 연합의 수준과 유형

[표1] 대학 간 연합의 수준과 유형

1단계	낮은 수준 공유	대학의 자원을 타 대학이나 지역사회 등 외부 개방 일부 교과목에 대해 학생이 대학을 이동해 수업 들을 수 있는 학점교류나 교육과정을 MOOC 등을 통해 일반 대중에 공개하는 것 포함
2단계	부분적 연합: 높은 수준 공유	공유대학과 유사, 두 개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이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동의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연합하되, 거버넌스는 기관 간에 합의된 한정된 영역과 대상에 대해서만 의사결정 가능(예시: 연합의 범위를 교육과정에 한정하여 대학이 교육과정을 공동개발 및 운영하고, 공동학위나 이수증을 수여하는 것 등)
3단계	포괄적 연합	두 개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일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연합하는 체제로, 해당 거버넌스는 대학 운영과 관련된 포괄적인 결정 권한을 가짐(의사결정의 범위가 특정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열거되지 않은 사항까지 결정 가능)
4단계	대학 통합	두 개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되는 것으로, 이 경우 한 개 이상의 대학이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됨. 단일 거버넌스 하에서 단일 고등교육기관으로 운영

※ 통합 또는 연합 추진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며, 담대한 혁신 추진 중 필요한 절차여야 함

2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지정 절차

1 | 평가위원회 구성

- **(원칙)** 평가위원회 위원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1단계(예비지정)와 2단계(본지정)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 **(구성)** 각 평가위원회는 교육·산업·연구계, 전문가 등 관련 분야 **대표성을 갖춘** 자로 구성

- **(상피)** 평가위원회 구성에 있어, **최종 출신학교, 현 소속기관** 등에 대한 상피제를 적용하여 평가 공정성 확보

- **2인 이상의 평가위원**이 심사 공정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특정 평가위원 배제 요청 시 제외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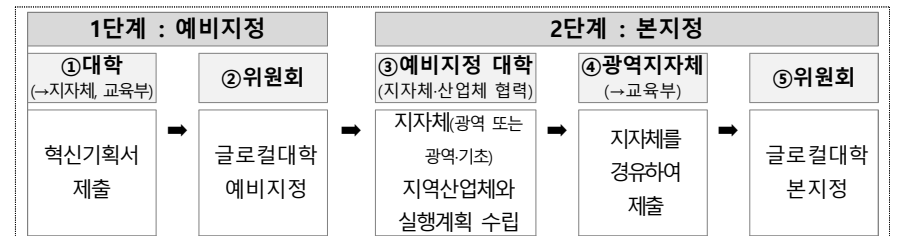
- **(운영)** 전체 평가위원은 평가 대상인 **모든 대학**에 대해 **평정** 원칙, 단, 평가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평가 패널**을 구분하여 운영 가능

- 특히 **1단계(예비지정)**의 경우, 국립대·사립대·전문대 등 **대학설립 유형**에 따른 평가 패널 구성 검토

2 | 지정 절차

- **1단계 예비지정 후 2단계 본지정** 평가를 거쳐, 글로컬대학위원회에서 최종 지정대학 결정 및 대학별 최종 지원액 등 산정

[표2] 글로컬대학 지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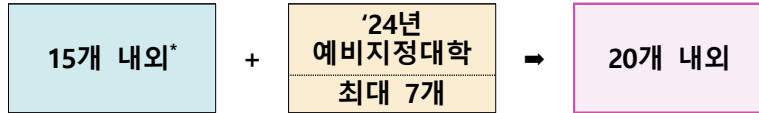


- 대학의 1·2단계 **평가 제출자료**에서 오류 또는 허위가 확인될 경우, 글로컬대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취소 및 환수** 등 조치 가능

3 예비지정 계획

1 예비지정 규모

- (총 지정규모) 20개 내외 * 본지정 목표 수(10개 이내)의 약 1.5배 내외



- ('24년 예비지정대학, 7개*) '24년과 기본방향이 동일한 혁신기획서를 보완·개선하거나 발전시킨 경우, 예비지정 대학 인정

* 경남대학교·동명대학교·신라대학교(연합), 동신대학교·초당대학교·목포과학대학교(연합), 영남대학교·금오공과대학교(연합), 울산과학기술대학교·연암공과대학교(연합), 충남대학교·한밭대학교(통합), 한남대학교

※ '23년 예비지정 후 '24년 본지정 미지정 대학은 '25년 예비지정 대학 지위 미인정 ('24년 미지정 대학에 대한 '25년 예비지정대학 지위 인정에 대한 글로벌대학위원회 권고 반영)

- 다른 대학과 동일한 일정·방식으로 혁신기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24년 제출 혁신기획서의 비전·목표 등 큰 혁신의 방향은 유지하며 일부 수정 및 혁신과제 추가 가능
- 예비지정 평가위원회는 '24년 예비지정대학(7개)의 혁신기획서 혁신방향 유지 여부 등 예비지정 대학 인정여부를 별도 심의
- ▲새로운 비전과 목표에 따라 새로운 혁신과제로 구성된 혁신기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신청한 대학의 통합 또는 연합 신청대학 구성이 변경될 경우 일반적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2 예비지정 신청 : 혁신기획서 수립·제출

- 대학의 혁신비전 및 과제를 핵심적으로 제시한 혁신기획서(최대 5쪽) 제출
 - 신청서는 교육부(한국연구재단) 및 대학 소재 광역지자체에 동시 제출
 - 예비지정 대학의 혁신기획서는 예비지정 결과 발표 후 온라인 등을 통해 대국민 공개 예정
- ※ 미지정 대학의 경우도 공개에 동의한 경우 혁신기획서 공개 예정

- 혁신 방향은 RISE 계획과 국립대육성사업·(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등 타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혁신 방향과 일관성을 갖고 유기적으로 연계
 - RISE, 평생학습 5개년 계획, 산학협력 기본계획, 교육발전특구 등 교육부와 중앙부처 정책·제도, 대학규제 혁신 사항 충분히 활용
 - 지역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혁신 방향은 지자체 지역발전전략 등과 연계되어야 하며, 다양한 범부처 지원사업 등을 활용
- 글로벌대학30 프로젝트의 추진 비전·목표 달성을 위한 4대 추진 전략에 따라 대학의 혁신과제들을 구체화하되,
 - 대학의 설립 목적과 비전, 중장기 발전계획, 비교 우위적 강점 분야의 특성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학 고유의 혁신모델 제시
 - 설립 유형·규모 등 각 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혁신계획 마련 필요
- 글로벌대학30 프로젝트의 성과는 결국 글로벌대학이 학생, 학부모, 지역, 산업계가 인정하는 대학이 될 것인지의 여부이므로,
 - 혁신기획서에 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수요자 요구 분석이 반영될 필요

3 예비지정 평가

- (방식)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평가위원회에서 서면 및 대면심사
 - 모든 신청대학을 대상으로 서면 및 대면 심사를 하며, 평가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필요 시 서면질의 또는 추가자료 제출 요청 가능
- (추천) 평가위원회는 평균 점수 70점 이상인 대학 중 순위에 따라 본지정 대학수의 1.5배수 내외를 예비지정 대학으로 추천
 - ※ 총점이 70점 미만이거나 혁신성 점수가 영역 총점(60점)의 50% 미만인 경우 추천 제외
- 글로벌대학위원회는 예비지정 평가위원회의 '24년 예비지정대학 심의 결과, 평가점수 및 순위를 토대로 글로벌 예비지정 대학 결정

[표3] 예비지정 평가 기준

영역	평가 주안점
혁신성 (6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의 비전과 목표는 기존 대학 운영의 틀을 넘어 과감하고 도전적인가? • 제시한 혁신계획에 따르면, 해당 대학이 한국의 대학혁신을 대표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이 될 수 있을 것인가? • 산학협력 허브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이 제시되었는가? • 대학 안·밖, 대학 내부(학과, 교수)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가 혁신적인가? • 설립 유형·규모 등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혁신계획을 수립하였는가? <p>※ 대학 유형에 따라 특성 및 지역에서의 역할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대학의 혁신성 평가</p>
성과관리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혁신 추진체계를 제시하였는가? • 혁신계획의 실행에 따른 자율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획은 적절한가?
지역적 특성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혁신계획이 지역의 발전 전략과 연계되어 있으며, 지역과 지역 내 다른 대학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가? • 대학이 지역 혁신 허브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대학, 지자체, 산업계의 역할은 명확하며 실행 가능한가?

※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신청서(혁신기획서) 작성 지침은 계획 확정 발표 시 배포

4 본지정 계획

1 평가 대상 및 지정 규모

- (평가 대상) 글로벌대학 예비지정평가위원회의 추천을 토대로 글로벌대학위원회가 예비지정한 대학
- (총지정 규모) 10개 이내*
 - * 평가결과 및 글로벌대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글로벌대학위원회는 평가결과와 혁신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총지정 규모 결정)

2 본지정 신청 : 실행계획서 수립 · 제출

- (예비지정 대학) 대학-지자체(광역시 또는 광역·기초)-지역산업체가 공동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 최종 실행계획은 광역지자체로 제출
 - 지자체 발전전략, 지역산업체 성장계획과 연계하여 지자체·지역산업의 수요를 고려한 글로벌대학 연차별 실행계획 및 목표 설정
 - 비전 및 실행계획 실현을 위해 글로벌대학, 지자체, 지역산업체 간 역할·기능 정립, 각각의 인적·물적 자원 연계·활용 방안 논의
 - 과감한 혁신 방향 및 실행계획에 대한 대학 구성원 동의·설득 필요
 - ※ 혁신 방향 및 실행계획에 대한 대학 구성원 의견수렴 결과 제출 필요(방법·양식 자율)
- (지자체) 글로벌대학에 대한 광역·기초단위의 행·재정지원 및 관련 산업 투자·육성, 인재양성·연구개발·산학협력 등 글로벌대학 성과를 지역에서 활용하기 위한 지원 의지 및 방안 제시
 - 대학과 지역의 기업, 연구기관, 다양한 혁신 주체 간의 연계 지원 및 예비지정 대학의 실행계획서를 총괄 취합하여 제출
- (교육부) 예비지정 대학이 실행계획 수립 시 컨설팅 등 지원
 - 필요시 고등교육 전문가, 경제·산업계 인사, 교육부 업무담당자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희망 대학에 컨설팅 제공

3 본지정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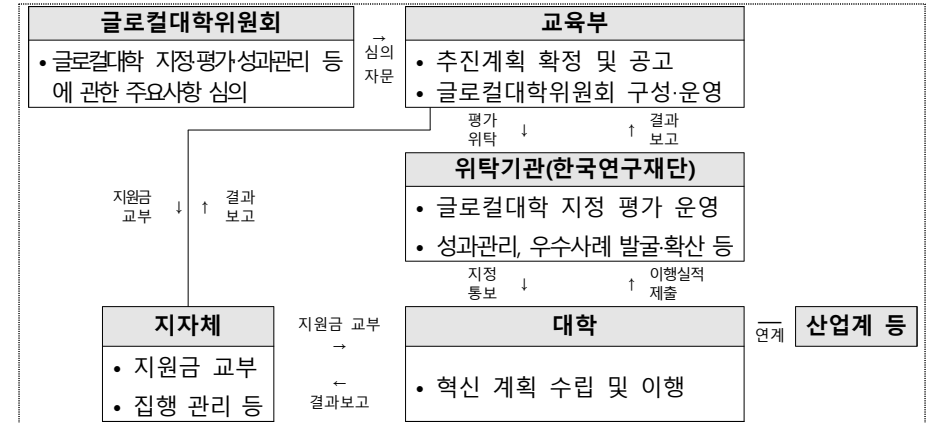
- (방식) 글로벌대학 본지정 평가위원회에서 서면 및 대면심사
 - ※ 평가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현장방문, 서면질의 또는 추가 자료제출 요구 가능
 - (추천) 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 평균에 따라 본지정 순위 도출
 - 글로벌대학위원회에서 본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 및 순위를 토대로 10개 이내 대학 본지정 결정
 - ※ 글로벌대학위원회는 RISE 체계에서 글로벌대학의 선도 역할 수행을 감안하여 ▲대학 부경·비리사항, ▲대학 평가결과가 유사한 경우 시도별 지정 현황 고려 가능
- ⇒ 본지정 글로벌대학은 지방대육성법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하여 행·재정상 우대

[표4] 본지정 평가 기준

평가 요소	평가 주안점
대학 실행 계획 (70점)	계획의 적절성 (5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컬대학 실행계획은 예비지정 때 제시한 과감하고 도전적인 비전 및 목표에 근거하여 수립하였는가? • 글로컬대학의 비전 및 목표, 혁신전략은 지역발전 전략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가? • 글로컬대학의 실행계획은 대학의 비전 및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타당성, 구체성, 실행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 글로컬대학의 혁신전략 및 실행계획은 대학 구성원 간 합의와 소통의 결과에 근거하여 수립되었는가? • 글로컬대학의 연차별 실행계획 및 재정 확보방안은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성과 관리 적절성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컬대학의 연차별 성과목표와 계획은 도전적이고 달성가능한가? • 글로컬대학으로의 성장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성과 관리체제의 운영계획은 적절한가? • 글로컬대학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 차원의 성과목표(지역사회 기여도)가 도전적이고 달성 가능한가? • 추진하려는 혁신과제들이 글로컬대학 지원 기간 종료 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지자체의 지원 및 투자 계획 (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컬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투자 규모 및 계획은 적절한가? • 글로컬대학과 관련한 지역 산업을 육성할 지자체의 계획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가? • 글로컬대학의 인재양성, 연구개발, 산학협력의 성과를 지역에서 활용하기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V. 추진체계 및 기타 사항

□ 추진체계



- **(글로컬대학위원회)** 글로컬대학 지정과 관련한 주요 사항 심의, 최종 지정 대학 결정 및 대학별 지원액 산정 등
- **(교육부)**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 수립·공고 등 관련 사항 총괄, 글로컬대학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 **(한국연구재단(중앙RISE센터))** 글로컬대학 지정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성과관리 및 확산 등 수행
- **(지자체(지역RISE센터))** 글로컬대학 지원금 교부, 집행 관리 및 정산, 글로컬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등
- **(대학)** 지자체, 산업체 등과 연계하여 지역 혁신 모델을 제시하고,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성과 공유·확산 등 수행

□ 지원금교부 및 집행 등

- 글로컬대학 지정에 따른 지원금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사업비에 시도별 인센티브로 포함하여 교부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과 관련된 사항은 「보조금법」, 「RISE 운영 규정」, RISE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름
- 글로컬대학 지정 평가 및 성과관리 등과 관련된 사항은 RISE사업의 중앙RISE센터 사업운영관리비 활용 가능

VI. 성과관리

- **(목표 설정)** 대학이 비전 및 지자체 발전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감한 혁신과 변화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자율 목표를 제안**
 - 대학이 제안한 자율 목표는 **글로벌대학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정**
- **(성과 관리)**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변화하는 단계적인 모습(학과·구조 개편 등)을 기준으로 **연차별 실행계획과 이행 목표치 설정**
 - 실행계획 및 목표 달성 여부 등 **대학 자체 성과평가 후 글로벌대학위원회에 보고·심의, 필요시 전문가 평가 및 환류**
 - **3년차, 5년차에** 전문기관 등을 활용하여 **글로벌대학 실행계획 이행 및 목표치 달성 등 중간 모니터링 등 동행(同行)평가 실시**
 - ※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초기 정착 집중 지원(지정 대학 별도 안내)
 - 모니터링 결과, 실행계획 미이행 또는 성과 미흡 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약 해지 및 지원 중지 가능, 필요시 사업비 환수 조치 검토**
 - ※ 실행계획 미이행 또는 성과 미흡에 대한 대학 소명서를 제출받아 협약 해지 등 검토
 - ※ 특히 통합 또는 연합을 추진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목표 기간 내 출범하지 못하거나 사업 기간 종료 후 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사업비 환수 등 강력 조치 검토
- **(대도약 이행 협약)** 글로벌대학과 교육부, 지자체, 산업체 간 각각 이행해야 할 역할과 과제를 제시한 **'대도약 이행 협약' 체결**

❖ 대도약 이행 협약

- 글로벌대학, 교육부, 지자체, 산업체 간 **대도약 이행**을 위해 **사전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으로, 5년간 각각 이행해야 할 **역할과 과제**를 제시
- 대학은 5년간 **연도별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부와 지자체의 규제 완화와 범부처·지자체·산업체 지원 사항 등 역할**을 명시

- **(영향력 평가)** 대학의 지역 산업·사회 협력 결과에 따른 **영향력 (Impact)**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대학별 홈페이지에 **결과 공개**
 - ※ (예) 지역정주 인재 수, 지역 고용 정도, 지역산업에 미친 영향력(산학협력, 연구개발), 지역에 창출한 GRDP, 소비규모, 지방세 납부액 등
 - ※ Impact 평가 핵심 지표 및 분석 방식, 공개 방법 등은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안내

VII. 향후 추진 일정(안)

- '25년 글로벌대학 지정계획 발표 및 공고 : '25. 4. 3.
- 예비지정 신청서(혁신기획서) 접수 : ~'25. 5. 2.
- 예비지정 결과 발표 : '25. 5월
 - ※ 예비지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검토 : '25. 5~6월
- 본지정 실행계획서 접수 : ~'25. 8월
- 본지정 결과 발표 : '25. 9월
 - ※ 본지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검토 : ~'25. 9월
- 본지정 결과 확정 : '25. 3분기
 - ※ 2단계 평가(본지정)와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상기 일정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붙임 1

2025년 글로벌대학 지정계획 주요 변경 사항

내용	'24년	'25년 주요 변경 사항
지원	국립대육성사업, 지방(전문)대학 활성화사업 인센티브 지원 1차년도 교당 50억원	[변경]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시도별 인센티브 지원 ※ 시도별 RISE예산 교부 시 글로벌대학 지원을 교부조건으로 부가
신청 자격	일반재정지원대학 또는 국립대학 ※ 국립대학 육성사업 또는 지방(전문)대학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 자격 필요 설립 인가를 받지 않은 캠퍼스는 본교와 통합하여 본교 소재지에 따라 신청	[변경] 기관평가인증* 결과 조건부 인증 이상을 받은 대학(국·공·사립 전체) 및 사립대학 재정진단 결과 재정건전대학 * 일반대·전문대 기관평가인증,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예비 지정 규모	15개 내외 + α (최대 5개)	(본문 좌동) [추가] * 대학 전체 정원 중 수도권 소재 캠퍼스의 정원이 50% 초과일 경우 신청 불가 [변경] 20개 내외 - '24년 예비지정 대학(신규 7개)은 계획 방향 유지 시(일부 수정 및 혁신과제 추가 가능) 예비지정 대학 지위 인정 - '23년 예비지정 후 '24년 본지정 미지정 대학은 '25년 예비지정 대학 지위 미인정
지역 고려	-	<예비지정> 좌동(시도별 지정현황 미고려) <본지정> [추가] 대학 평가결과가 유사한 경우 시도별 지정 현황 고려 가능
본지정 규모	10개 내외	[변경] 10개 이내 ('26년 지정 없음)
추진 체계	<지자체> 실행계획서 공동 수립·신청, 글로벌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추가] <지자체(지역RISE센터)> 글로벌대학 지원금 교부, 집행 관리 및 정산, 글로벌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등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은 각 사업에서 정한 바에 따름	[변경]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과 관련된 사항은 「보조금법」, 「RISE 운영규정」, RISE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름

붙임2

글로벌대학30 프로젝트의 비전 · 목표 및 추진전략

비전

국가-지역-대학의 세계적 경쟁력 동반 상승

목표

- 학과 간, 대학-지역·산업 간, 국내외 간 벽 허물기 ·
 - 대학-지자체-지역 산업계 탄탄한 파트너십 구축 ·
 - 글로벌 수준의 대학-지역 동반 성장 모델 선도 ·
- ⇒ **마중물로서 글로벌대학 30교 내외 육성**

추진 전략

대학 외부

① 지원 전략 혁신

① “선택과 집중” 전략

대학 혁신 성공모델 창출 지원을 통한 대학 혁신의 방향 제시

② 범부처·지자체간 장벽없는 지원

혁신에 필요한 규제 특례, 범부처·지자체 재원 집중 지원

③ 수요자 관점의 대학혁신 지원

민간전문가(글로벌대학위원회) 주도 계획 수립부터 지정·평가·지원 추진

④ 스마트한 지정 및 성과관리

대학이 부담없는 지정·관리 방식, 데이터 기반 효율적 성과관리

대학 내부

② 대학 구조·운영 혁신

① 산학·지역협력의 허브화

지역과 산업의 수요를 반영한 인재양성·연구·창업 등 추진

② 대학 내·외부의 벽 허물기

학외자의 대학운영 참여 확대
지역사회와 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학사운영 및 내부 체제 개편

③ 대학 혁신 추진체계 운영

총장의 혁신 리더십 지원
지속가능한 혁신추진체계 구축

④ 대학 성과의 투명한 공개

대학의 자율 성과관리 시스템을 통한 성과 분석 및 대국민 공개

대학 내부 대학 구조 · 운영 혁신 추진 전략

① 지역혁신을 위한 산학협력의 허브로 역할

- 대학이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의 산업과 사회의 수요를 고려한 대학의 혁신 방향 설정
- 지역의 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학사구조 및 교육과정 융합 및 재구조화 등 교육혁신 추진
- 대학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혁신적인 지식을 생산하고 창출하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문제해결 방식의 프로젝트 수업 등 교수학습 다변화
- 대학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산업이 필요로 하는 신기술 개발 연구 및 지역 문제해결을 위한 지·산·학 연계 등 협력 강화
- 대학의 우수 인재가 지역에 머물며 지역 산업의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체 등 지역 기관과의 연계·협력 방안 마련

② 대학 안·밖, 대학 내부의 경계를 허무는 유연한 대학 운영

- 대학이 지역 산업·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외부의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대학 거버넌스의 개방 추진
 - 대학 거버넌스에 지자체 및 산업계 등 외부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
 - 다변화된 사회수요에 대응하고 학생의 다양한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유연한 학사 운영, 혁신을 주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내부 체제 개편
 - JA(Joint Appointment) 교원*, 우수 교원 임용을 위한 교원 승진·인센티브 재설계, 무(無) 학과제도·융합전공·자기주도설계 전공(concentration), 기초교양 학부-전공탐색기간, 복수전공 활성화 등
- * (JA교원제도) 학과-학과, 대학-대학, 대학-산업체 공동 소속으로 임용하는 교원

③ 과감한 대도약(Quantum Leap)을 위한 혁신 추진 체계 운영

- 기존 다른 대학이 도전하지 않은 과감한 도전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지닌 선도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한 중장기 혁신계획 마련
- 중장기 혁신계획의 추진 및 실행 관련 의사결정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혁신 실행체계 마련
- ※ (예시) 학칙으로 대학총장이 위원장인 (가칭)글로벌대학추진위원회를 두고 글로벌대학 관련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운영
- 5년 지원 이후에도 대학이 스스로 지역의 산업·사회와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혁신과 성장을 추진할 수 있는 중장기전략 수립
- ※ (예시) 산학연계 활동 및 창업 확산, 국내외 민간 지원재단 등과 연계, 자체기금 확충 등 대학의 지속가능한 수익창출 구조 마련

④ 대학의 운영 성과 및 지역사회 기여도의 투명한 공개

- 대학은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투명한 성과공개를 위한 자율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 또한, 대학의 지역 산업·사회 협력 결과에 따른 지역기여도 및 영향력(Impact)의 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 검토

지역기여도 및 영향력(Impact) 분석

- 산업·경제·문화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대학의 기여도와 영향력을 계량적인 지표로 이용하여 산출·분석하는 보고서
- ※ (예) 지역 정주 인재 수, 지역 내 고용 정도, 지역산업에 미친 영향력, 지역에 창출한 GRDP, 소비규모, 지적재산권 수입액 등
- 해외대학은 이미 대학의 지역사회·산업에 대한 기여도와 영향력을 구체적인 수치로 환산하여 분석·공개, 이를 통해 대학에 대한 대외 인식 제고



출처 :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Economic, Research, and Community Impacts(Fiscal year 2018)



출처 : Economic and Community Impacts of the University of Missouri System (January 2022)

[참고] 해외 대학의 대학-지역-산업 간 벽 허물기 사례

① 대학과 산업간 벽 허물기로 대학의 학사구조와 교수학습 전면 개편

- (예1) 지역 산업 수요 맞춤형 학과 구조 개편 및 학위 프로그램 운영, 산업 현장 전문가를 교원으로 적극 활용하여 현장 적용이 가능한 교육 제공
※ (해외 사례) 독일 미텔슈타트대
- (예2) 대학이 지역 기업별 1대1 연구실 및 연구원(교수·학생) 제공, 기업 연구개발 및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중심 교수학습(PBL)으로 전면 개편
※ (해외 사례) 미국 올린공과대

② 기존 산업의 벽을 허무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창업·장직 대학

- (예) 모든 학생에게 전 교육과정에서 창업과 기업가정신을 교육, 대학 내 연구개발재단과 기술연구소는 창업 아이디어만 있으면 연구, 자금조달, 마케팅, 계약관리 등 전반에 관한 것을 지원, 교수진을 실제 경영인(CEO)으로 구성
※ (해외 사례) 이스라엘 테크니온공과대, 텔아비브대학, 미국 뱁스칼리지

③ 대학 간, 지역 연구기관 간 벽 허물기로 대학 교육·연구 기능 혁신

- (예1) 시도내 대학 간 통합하여 캠퍼스 간 자원 공유, 유사 학과 통합 및 중복 업무 재배치, 캠퍼스별 기능 특화
※ (해외 사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시스템
- (예2) 대학과 지역 연구기관 간 통합 또는 연계를 통해 대학 연구 기능 강화, 연구기관의 전문가를 교수로 활용
※ (해외 사례) 프랑스 그로노블 알프스 대학, 이스라엘 텔아비브

④ 학문·학과 간의 벽 허물기로 학생 중심의 전공 체계로 전면 개편

- (예1) 학부생 전원을 무(無)학과 단일계열로 선발하고 학생은 성적에 대한 부담 없이 자신의 학업 적성을 탐색, 학생(수요자) 중심의 전공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학과별 정원 폐지, 학과에서 설계한 교육과정이 아닌 학생이 관심 있는 분야에 맞추어 스스로 교육과정 설계
※ (해외 사례) 미국 브라운대
- (예2) 여러 전공·학문의 교수가 모여 하나의 강의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모든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하고,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팀 프로젝트 형식으로 융합교육 진행
※ (해외 사례) 미국 올린 공과대

⑤ 국내-국외 벽 허물기로 지역 특화 산업의 외국인 정주 인력양성에 특화

- (예1)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특화산업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국어, 전문용어 훈련, 상호문화적응 훈련 등 외국인 유학생-지역특화산업 취업 연계
※ (해외 사례) 독일 미텔슈탈트대
- (예2) 다국가에서 국제학생을 전체 학생의 50% 이상으로 유치하고, 전 과목을 한국어·영어 이중 수업 진행, 전학생 100% 해외경험 제공
※ (해외 사례) 일본 리츠메이칸 아시아태평양대

⑥ 학령인구-非학령인구 벽 허물기로 대학 교육 수요자의 범주 확대

- (예1) 지역기업과 연계하여 재직자의 재교육(upskill 또는 reskill)을 위한 학부 및 교육과정 신설·운영
※ (해외 사례) 미국 애리조나대
- (예2) 전통적인 학령인구가 아닌 근로자 학생, 지역주민, 은퇴자(50~60대)를 주 학생으로 입학시켜 평생교육 중심으로 전환
※ (해외 사례) 미국 서던 뉴햄프셔대

1 연차별 이행점검

- 대학이 실시한 연차별 체크리스트 점검결과에 대해 과제 이행여부와 추진도, 대학의 이행노력 등을 상위점검(필요시 현장점검 실시)
 - ※ 3차년도 및 5차년도 체크리스트 (상위)점검은 3·5년차 전문기관 동행평가 실시로 같음
- 상위점검단은 자체 성과평가 결과 이행실적에 따라 이행 수준별 성과 등급 및 점검의견을 글로벌컬트에 보고
- 글로벌컬트는 점검단의 성과 등급 및 점검의견을 고려하여 연차별 지원금 조정, 전문가 평가 및 컨설팅 등 환류 조치 심의·의결
 -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23.7., 교육부)」에 근거, 추진 실적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협약 해지, 지원금 삭감 및 환수 가능

2 전문기관 동행평가

- 3·5년차까지의 이행 실적, 자율목표 달성수준 등 추진실적(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별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동행평가 실시
 - ※ 각 지정연도에 따라 3·5년차 지원기간이 종료된 당해연도 3월 이후 평가 실시 검토 ('23년 지정대학의 경우 '25년 사업('25.3~'26.2)이 종료된 '26년 3월 이후 평가)
- 평가위원회 평정 결과를 토대로 글로벌컬트 심의를 거쳐 연차별 지원금 조정, 지원중지, 자격중단, 협약해지, 지정취소, 지원금 환수 등 조치 검토·결정

3 유관 재정지원사업 성과평가 연계

- 글로벌컬트는 글로벌대학30 프로젝트와 관련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 * 국립대학 육성사업, 지방(전문)대학 활성화 사업 뿐만 아니라 유관(종료)사업 포함
- 혁신 선도대학으로서 성과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연차별 지원금 삭감, 지원중지 조치 등 심의·의결 가능

4 사후변경 관리

- 특별한 사유로 실행계획 또는 성과목표 수정·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교육부 승인 요청 및 글로벌컬트 심의 필요
 - 글로벌컬트 심의를 거쳐 변경 승인이 된 경우, 컨설팅을 통해 수정된 실행계획의 타당성, 성과목표 적절성 등 검토·변경

5 부정·비리 등 조치

【 본지정 단계 】

- 본지정 평가 시, 각 대학은 부정·비리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고, 교육부는 부내 소관부서 보유자료와 교차검증
 - * 제출 시 누락된 사안이 추후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될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글로벌컬트 심의를 통해 필요시 사업비 삭감, 지원 중단, 협약 해지, 지원금 환수 등 조치 가능
- 글로벌컬트 본지정 평가 결과 심의 시, 대학별 부정·비리 사안을 심의 참고자료로 제공하여 최종 지정 시 검토·반영

【 글로벌대학 지원 기간 중 】

- 교육부는 글로벌대학 지원기간 중 정기적으로 글로벌대학에서 발생하는 부정·비리 사안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
 - ※ 각 대학은 연차별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제출 시 부정·비리 사실 확인서를 함께 제출
- 글로벌컬트는 글로벌대학의 추진성과 미흡, 부정·비리 사안 등 他 대학 선도 역할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할 경우, 심의·의결을 거쳐 자격중단, 지정 취소, 지원금 환수 등 조치 가능
 - 글로벌대학과 직접 연계된 중대비리*에 대해 글로벌컬트는 지원금 감액, 자격중단, 협약 해지, 지정취소, 지원금 환수 등 엄중조치 심의·의결
 - * ① 사업 추진실적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② 사업 목적 외 예산 사용, 횡령, 사업 관련 대학정보공시 지표값 오류 등 사업비 결정 및 집행 등과 관련된 대학의 부정·비리가 확인된 경우, ③ 사업을 활용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등 운영과 관련된 대학의 부정·비리가 확인된 경우, ④ 그 외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대학의 부정·비리로 글로벌컬트가 판단하는 경우
 - 글로벌대학 추진과 직접 연계되지 않더라도 부정·비리, 문제사안에 관한 언론보도·민원·제보 등의 중대성,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조치 심의·의결 가능
 - ※ 글로벌컬트는 사안 발생 시 조치 심의·의결을 위해 해당 글로벌대학, 교육부, 전문 기관에게 별도 자료요구 가능

6 글로벌대학협의회 건의

- 성과가 지속적으로 미흡하거나 부정·비리 사안이 발생한 글로벌대학이 있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글로벌컬트에 탈퇴 건의
- 글로벌컬트는 건의사항에 대한 심의 후 자격중단, 지정 취소, 지원금 환수 등 검토·결정